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6월 8일

발의자 : 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총정수 변경(현행 22명 → 개정 23명)에 의거하여,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(안 제3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

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별표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6. 6. 8. ~ 2026. 6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7명”을 각각 “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, 상 임위원회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 다.	제30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건복지위원회 <u>7명</u> 이내	2. ----- <u>8명</u> ---
3. 도시건설위원회 <u>7명</u> 이내	3. ----- <u>8명</u> ---
4. 행정기획위원회 <u>7명</u> 이내	4. ----- <u>8명</u> ---